

예산총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0,607,226	34,818,217
일반회계	925,965,805	27,778,974
특별회계	234,641,421	7,039,243
공기업특별회계	131,625,772	3,948,7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416,030	2,502,4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209,742	1,446,292
기타특별회계	103,015,649	3,090,469
주택사업특별회계	90,000	2,7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040,228	211,207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8,171,303	2,345,139
교통사업특별회계	13,420,302	402,609
대지보상특별회계	1,577,688	47,331
기반시설특별회계	87,756	2,633
수질개선특별회계	1,924,372	57,731

제 2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84,279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8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